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도시조합 관련 내용 신설 등〉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573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2
III. 개정안 관련 21대 국회 심사 경과	4
IV. 검토의견	6
1. 도시조합 관련 검토	6
2. 회원조합지원자금 관련 검토	35
3. 조합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도입	43
4. 농협중앙회 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점검 의무화	47
5.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51
6.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제한 도입	56

7. 농협중앙회 이사에 경제·금융지주 대표 추가	62
8. 집행간부의 이사회 의견 진술 규정 정비	71
9. 임원인사추천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신설	74
10. 인사교류심의회 관련 규정 신설	80
11. 운영협의회 관련 규정 신설	85
12.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88
13.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사항 규정	94
14. 임원의 결격사유 중 벌금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제외	97
15. 지역농협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	100
16. 조합등 선거 관여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	103
17. 부칙 검토	105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윤준병의원 등 21인
2. 제 출 일 : 2024. 6. 18.
3. 회 부 일 : 2022. 6.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러나 연이은 은행권 및 지역 농·축협이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상향함으로써 회원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임.

아울러 입지여건에 따라 조합 간 사업구조와 경제력 차이가 확대되면서 도시조합-농촌조합 간 경영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균형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과 함께 도시조합은 '농협'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여 신용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경제사업에 대한 역

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조합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으로서는 비상임 조합장이 지나치게 장기간 연임하는 것에 기인한다는 지적과 함께 임원 인사의 비밀주의가 관행으로 지속돼 공정성마저 확보되지 못한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농협이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조합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지역 조합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등).

다. 지역조합장의 경우 선출방식을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일원화 함(안 제45조제5항 등).

라.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에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차례로 제한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마.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를 제외하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7호).

바. 도시조합은 도시조합 외 조합이 추진하는 농산물 판매활성화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7조의2제5항 신설).

사. 도시조합은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매출총이익의 3%의 범위에서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59조의2 신설).

아. 중앙회 이사회 구성인원을 늘리고, 이사회에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및 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를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125조제2항제6호 신설 등).

자.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의사록 작성 등을 의무화하여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농협중앙회에 인사교류 심의회를 설치함(안 제125조의5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제131조의2 신설).

차.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취약 부분을 내부통제기준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25조의4제4항 및 제5항 신설).

카. 농협중앙회에 회원조합장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25조의7 신설).

타. 중앙회는 도농상생사업비를 재원으로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하고, 중앙회에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4조의6 및 제134조의7 신설).

- 파.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대상 선정 등을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자금운용계획 등의 공개 등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함(안 제136조의2부터 제136조의5까지).
- 하.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50으로 상향함(안 제159조의2제1항).
- 거.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조합등과 중앙회에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72조제1항제1호).

Ⅲ. 개정안 관련 21대 국회 심사 경과

개정안을 검토하기에 앞서 개정안과 관련된 농협법 개정안의 21대 심사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1대 심사 경과 >

□ 농협중앙회장 연임허용 등 「농협법」 개정안 4건* 발의

* 윤재갑의원('21.12월), 김승남의원('22.1월), 김선교의원('22.1월), 이만희의원('22.4월)

□ 농업계 의견수렴('22.11.18.~30.) 및 총 5차례 농해수위 법안 소위('22.11~'23.5월)에서 연임제 필요성, 문제점 및 보완방안 등 논의

○ 그간 농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농협 개혁과제 등을 포함하여 농협법 개정안 대안 마련 및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23.5.11.)

※ 농협법 관련 농해수위 법안 소위 논의 및 의결 경과

- ① ('22.11.9.~10., 법안소위) 정부가 회장 연임제 관련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함에 따라 조합원,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11.18~30)
- ② ('22.12.8., 법안소위) 회장 연임제 개정안 대안 의결(무이자자금 운영 투명성 제고방안 포함)
- 의결 이후, 농해수위 및 농업계에서 연임제와 함께 농협 개혁과제 등이 논의될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안 소위를 추가 개최하여 논의
- ③ ('23.3.20., 법안소위) 지역조합 내부통제 방안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등 의결
- ④ ('23.4.19., 법안소위) 농산물 판매 촉진 관련 도시농협 역할 강화방안 의결
- ⑤ ('23.5.11., 법안소위)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무제한→2회) 등 의결

□ 법사위 전체회의('23.8.23., 9.21.)에서 일부 의원들이 연임제 및 현직 회장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여 계류

* 연임 완화 시 현직 적용사례 및 현 회장 불출마 의사 확인 등 필요, 반대단체(20개) 설득 필요

□ 제21대 국회 임기만료('24.5.29.)로 폐기

□ 22대 국회 윤준병의원이 「농협법」 개정안 발의('24.6.18.)

○ 21대 국회 법사위 계류안 중 농협중앙회장 연임 내용은 제외하고, 해당 의원이 21대에 발의('23.1.12)한 개정안의 내용*을 추가함.

*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구체화 및 임원후보자 공개 모집, 인사교류심의회 설치운영 등

IV. 검토의견

개정안은 크게 도시조합, 회원조합지원자금,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조합장, 농협중앙회 운영 회의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정안의 조항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개정안의 조항별 특징]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현 행
도시 조합	▪ 도시조합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법률로 상향	내규
	▪ 도시조합의 非도시조합에 자금 지원 허용(안 제57조의2제5항)	신 설	-
	▪ 도시조합의 연도별 농산물 판매목표액 설정(안 제57조의2제6항)	신 설	-
	▪ 도농상생사업비 납부의무 부과(안 제59조의2)	법률로 상향	내규
	▪ 도농상생지원자금 조성·운용(안 제134조의6)	법률로 상향	내규
	▪ 상생협력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34조의7)	법률로 상향	내규
회원 조합 지원 자금	▪ 자금선정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36조의3)	신 설	-
	▪ 자금지원심의회 설치(안 제136조의2제3항)	법률로 상향	정관
	▪ 자금 조성·운용 계획 수립 시 포함항목 구체화(안 제136조의2제1항)	법률로 상향	내규
	▪ 자금지원규모, 배분기준 등 인터넷 등 공개(안 제136조의4)	신 설	-
	▪ 자금지원 성과분석 및 평가실시(안 제136조의5)	신 설	-
내부 통제	▪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도입(조합)(안 제44조의2)	법률로 상향	내규
	▪ 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점검 의무화(중앙회)(안 제125조의4)	법률로 상향	내규
조합장	▪ 지역조합장 선거 직선제로 일원화(안 제45조)	제도개선	-
	▪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안 제134조의7)	제도개선	-
이사회	▪ 경제·금융지주 대표를 중앙회 이사로 추가	신 설	-
	▪ 집행간부(간부직원)의 이사회 의견진술 관련(안 제43조, 제125조, 제125조의2)	체계자구	-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현 행
회의체	▪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신설(안 제125조의5)	법률로 상향	정관
	▪ 인사교류심의회 규정 신설(안 제131조의2)	법률로 상향	정관
	▪ 운영협의회 규정 신설(안 제125조의7)	법률로 상향	정관
농지비	▪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안 제159조의2)	제도개선	-
결격 사유	▪ 집행유예 관련 조문정비(안 제49조제1항제7호)	체계자구	-
	▪ 조합원 신분 보유 명확화(안 제49조제1항제10호)	체계자구	-
사업 평가	▪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관련(안 제161조의7)	신 설	-
처벌 규정	▪ 공직선거 관여 금지 규정 위반 시 처벌 관련(안 제172조제1항)	체계자구	-

1. 도시조합 관련 검토

가. 개요

개정안은 ‘도시조합’의 정의를 신설하고, 도시조합에 도농상생 협력 의무를 부과하며, 도시조합이 도시조합 외 조합(이하 ‘농촌조합’이라 함)에 농산물 판매활성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조합과 농촌조합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매 목표액을 설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도시조합에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농협중앙회가 도농상생사업비를 재원으로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하도록 함. 또한,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용계획 등과 도농의 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도시조합과 농촌조합의 상생협력과 조합 간 공동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음.

[도시조합 관련 조문]

조문	내용
안 제2조제5호 신설	도시조합 정의 신설
안 제10조제2항 신설	도시조합의 도농상생 협력의무 규정
안 제57조의2제5항 신설	농촌조합에 대한 도시조합의 농산물 판매활성화 자금 지원 근거 마련
안 제57조의2제6항 신설	도시조합과 농촌조합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도시조합의 판매목표액 설정
안 제59조의2 신설	도시조합의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 규정
안 제134조의6 신설	도농상생지원자금 조성·운용
안 제134조의6·7 신설	도농상생지원자금 조성·운용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상생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142조제2항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마련

현행법에는 도시조합에 대한 내용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농협중앙회 내규인 「회원조합지도·지원 규정」에서 도시회원(조합)의 요건, 도농상생기금의 조성 및 도농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도시회원 등의 출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회원조합지도·지원 규정」상 도시조합 관련 조문]

조문	내용
제75조	도시회원을 특별시·광역시 또는 인구 30만 이상 시 소재 회원 중 직전월말 기준 총자산 5,000억원 이상 회원으로 규정
제72조의2	중앙회의 도농상생기금 조성 및 도시회원 등 출연대상 회원과 출연비율

최근 조합의 입지여건에 따라 조합 간 사업구조와 자산규모 차이가 확대되면서 도시조합-농촌조합 간 경영격차가 심화되고, 특히 도시조합은 ‘농협’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여 신용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경제사업에 대한 역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관련 지표로 살펴보면¹⁾, 총자산은 도시조합이 농촌조합의 4.3배 수준이고 자기자본도 도시조합이 농촌조합의 3.8배 수준이며, 순이익의 경우 3.6배임.

[도시조합 및 비도시조합 자기자본 및 총자산]

(단위 : 백만원)

구분	납입출자금	총자산	자기자본
도시조합 평균(A)	26,469	1,270,791	85,219
농촌조합 평균(B)	10,289	295,024	22,572
대 비(A/B)	2.6	4.3	3.8

* 자기자본 : 출자금(납입, 회전, 가입금, 우선출자금) + 잉여금(자본잉여금, 법정적립금, 사업준비금 등)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 제출자료('24.8.14)

1) 특광역시, 인구 30만 이상 소재 총자산 5천억원 이상인 조합을 도시조합으로 하고 '23년말 결산 기준으로 분석함.

[도시조합 및 비도시조합의 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이익			비용				순이익
	매출 총이익	영업외 손익	계	판매 관리비	교육 지원비	법인세	계	
도시평균(A)	31,708	1,396	33,104	25,380	2,425	775	28,580	4,523
농촌평균(B)	10,119	616	10,735	8,234	1,079	158	9,471	1,264
대 비(A/B)	3.1	2.3	3.1	3.1	2.2	4.9	3.0	3.6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 제출자료('24.8.14)

또한, 도시조합은 매출총이익에서 신용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6% (농촌조합 58.2%)로 경제사업의 3배²⁾에 달하고, 매출총이익에서 차지하는 경제사업의 비중도 감소해왔음.

[매출총이익에서 경제사업 비중]

(단위 : 백만원)

2014			2020			2023		
매출 총이익	경제사업 매출총이익	비중	매출 총이익	경제사업	비중	매출 총이익	경제 사업	비중
4,029,859	1,199,958	29.8	5,103,322	1,453,078	28.5	6,151,322	1,673,595	27.2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 제출자료('24.8.14)

이에 개정안은 도시조합의 정의를 신설하고 도시조합에 농촌조합과는 차별화된 의무를 부과하며 도시조합이 납부한 도농상생사업비로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조합의 역할 강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하에서는 도시조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매출총이익(백만원): 도시 31,708 중 신용사업 23,975 / 농촌 10,119 중 신용 5,887

나. 도시조합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신설)

개정안은 도시조합을 농업협동조합 중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으로 정의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도시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중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관계 부처 등 의견

가) 농림축산식품부

도시조합-농촌조합 간 경영격차가 심화되고 도시조합의 역할 제고에 대한 농업계를 비롯한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할 때 도시조합 정의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며 그 세부기준은 개정안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나) 농협중앙회

도시조합-농촌조합 간 갈등 최소화 및 다양한 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도시조합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각 조합의 자산규모, 경제사업량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상생협력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21년 12월에 내부규정을 개정하여 도농상생기금 출연대상에 인구 30만 이하 지역 소재 지역조합 중 도시조합 수준의 자산규모를 갖춘 지역조합(전년도말 총자산 1조원 이상)을 추가하도록 한 바 있음.

2) 검토의견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의조항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개정안에 따른 도시조합의 기본요건(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조합)은 「회원조합지도·지원 규정」상 도시조합 관련 규정과 동일한바, 도시조합의 기본요건을 정하고 있는 정의조항의 신설에는 문제가 없어 보임.

「회원조합지도·지원 규정」

제75조(설치기준) ② 회원이 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기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도시회원(특별시·광역시 또는 인구 30만 이상 시 소재 회원 중 직전월말 기준 총자산 5,000억원 이상 회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신용점포 신설 시 판매장(하나로마트, 축산물프라자 등)을 병행 신설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부기준을 법령에 규정할 것인지, 농협중앙회에 설치하는 상생협력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간 이견이 있음.

농협중앙회의 의견과 같이 상생협력위원회에서 도시조합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할 경우 회원조합의 여건이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기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동 조항은 도시조합의 정의 규정으로서 개정안에 따른 의무 부과 등의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법령에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인구 30만 이상 시에는 특별자치시 1개, 광역시 6개, 기타 29개 등 총 36개가 해당되고,

현행 「회원조합지도·지원 규정」에 2012년부터 규정되어 온 도시회원의 기준을 충족하는 도시조합은 2023년말 결산 기준 194개소³⁾로 전체 조합(1,111개소)의 17.5%임.

또한, 도시조합 자산 합계는 246조 5,335억 원으로 전체조합(517조 707억 원)의 4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도시회원 현황]

구분	조합 전체	도시 조합	전체 대비 비율
자산 합계	517조 707억 원	246조 5,335억 원	47.8%
조합 수	1,111개	194개	17.5%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 제출자료('24.8.14)

3) 전체 도시회원 현황은 참고자료1 참조

다. 도시조합에 상생발전 등을 위한 노력 의무 부과(안 제10조제2항 신설)

개정안은 도시조합에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상호교류 확대 및 조합 간 공동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등, 중앙회,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 및 그 자회사는 다른 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u><신설></u>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도시조합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상호교류 확대 및 조합 간 공동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관계 부처 등 의견

가) 농림축산식품부

현행법 제10조에서 조합에 대하여 다른 조합 등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실익이 없음.

나) 농협중앙회

농식품부 의견과 같이 현행법 조항을 통해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음에도 도시조합을 특정하여 별도의 의무를 부과할 경우 도시조합의 거부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2) 검토의견

현행법 제10조는 다른 조합 등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통해 도시조합-농촌조합 간 상호교류 확대 및 조합 간 공동사업 활성화 촉진이라는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다만, 안 제10조제2항은 도시조합에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도시조합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선언적 의미를 가질 수 있어 보임.

라. 도시조합의 농촌조합에 대한 자금 지원 허용(안 제57조의2제5항 신설)

개정안은 농촌조합이 추진하는 농산물 판매활성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도시조합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① 지역 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다른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 회사 및 그 자회사와의 공동사업 2. 농산물의 계약재배 및 판매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거래처 확보 등 농산물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 ④ (생략) <u><신설></u>	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u>⑤ 도시조합은 도시조합 외 조합이 추진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u>

1) 관계 부처 등 의견

가) 농림축산식품부

신용사업 위주의 사업 운영으로 자금적 여유가 있는 도시조합이 농촌조합의 농산물 판매활성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필요성에 공감함.

다만, 도시조합 간 공동 추진이 필요한 사업도 있으므로 전체 조합

간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아닌 내부 규정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농협중앙회

현행법상 조합 간 자금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조합 간 상생,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상호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합 간 자금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에 공감함.

다만, 전체 조합 상호 간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고, 자금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사정에 따라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검토의견

개정안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도시조합이 농촌조합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촌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경제사업 규모화를 위해 도시조합 간 협업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상대적으로 우량한 농촌조합이 경영여건이 열악한 농촌조합의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경우도 존재⁴⁾하므로 자금지원의 범위를 전체 조

-
- 4) □ 도시조합 간 자금 지원 사례
○ 지원 규모 : 총 43건 / 56,300백만원
- 지원조합) 26 / 수혜조합) 28
○ 지원 사례 : ○○농협(경기) → □□농협(경기)
- 지원 기간 : 2023.1.31. ~ 2023.12.28.
- 지원 금액 : 20억원
□ 농촌조합 간 자금 지원 사례
○ 지원 규모 : 총 113건 / 119,900백만원
- 지원조합) 44 / 수혜조합) 92
○ 지원 사례 : 전남 △△△농협(전남) → ◇◇농협(전남)
- 지원 기간 : 2023.12.28. ~ 2024.12.28.
- 지원 금액 : 10억원

합 상호 간으로 수정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자금지원 방식이나 금액 등은 구체적인 사업(자금)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정관으로 정할 성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각 조합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마. 도시조합의 연도별 농산물 판매목표액 설정(안 제57조의2제5항·6항 신설)

개정안은 도시조합에 대하여 도시조합과 농촌조합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한 연도별 판매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① ~ ④ (생략) <u><신설></u>	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① ~ ④ (현행과 같음) ⑥ 도시조합은 조합원과 도시조합 외의 조합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판매목표액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관계 기관 의견

가) 농림축산식품부

조합원 생산 농산물의 판매 등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회장은 현행법 제142조제1항5)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경제사업 기준에 대

5)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②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 및 회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경제사업 기준에 대하여 그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 개선 요구, 합병 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며, 조치 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여 그 이행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영 개선 요구, 합병 권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제도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나) 농협중앙회

조합은 경제사업 기준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⁶⁾하고 있는바, 연도별 판매목표액 설정 의무를 별도로 부과할 경우 중복 규제의 우려가 있고, 지역별, 조합유형별 특수성으로 판매목표액을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2) 검토의견

농업협동조합은 생산자 협동조합으로서 조합원의 농업생산성 향상과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판로 확대, 유통원활화를 목적⁷⁾으로 함.

또한, 경제사업⁸⁾은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 유통조절·비축사업 등 농업협동조합 본연의 사업으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6)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38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④ 조합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경제사업 기준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액 등 경제사업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후략>

그런데 도시조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용사업 편중, 경제사업 비중 축소 등으로 생산자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매출총이익에서 경제사업 비중]

(단위 : 백만원)

2014			2020			2023		
매출 총이익	경제사업 매출총이익	비중	매출 총이익	경제사업	비중	매출 총이익	경제 사업	비중
4,029,859	1,199,958	29.8	5,103,322	1,453,078	28.5	6,151,322	1,673,595	27.2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 제출자료('24.8.14)

이에 개정안은 농산물의 주(主)소비지에 위치한 도시조합이 생산자단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농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다만, 도시조합은 현행법 규정⁹⁾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경제사업 기준¹⁰⁾인 ‘총매출액 대비 경제매출액’ 최저의무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최저의무기준 미달 시 경영 개선 요구, 합병 권고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또한, 2021년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시 도시조합의 경제사업이 미흡하다는 지적¹¹⁾에 따라 농식품부와 중앙회가 협의하여 최저의무기준을 202

9)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②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 및 회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경제사업 기준에 대하여 그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 개선 요구, 합병 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며, 조치 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경제사업 기준 산출식>

경제사업 기준 =		$\frac{\text{조정 경제매출액}^*}{\text{신용매출액} + \text{조정 경제매출액}^*}$
* 조정 경제매출액		
① 경제매출액 + ② 도농상생기금(평잔) + ③ 출하선급금(평가대상 연도 평잔) + ④「군납·공판·APC」수탁사업 실적 + ⑤ 공동사업 참여 실적 + ⑥ 조공법인 참여 실적		

11)

3년부터 25%로 상향한 바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의 활용·보완을 통해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2021년 국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농협경제지주회사】

-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것

바.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 부과(안 제59조의2 신설)

개정안은 도시조합은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매출총이익의 3% 범위에서 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도록 규정함.

현행	개정안
<신설>	제59조의2(도농상생사업비) 도시조합은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매출총이익의 3% 범위에서 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 도농상생사업비로 납부한다.

1) 관계 부처 등 의견

가) 농림축산식품부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를 법제화할 경우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 조달의 안정성 및 구속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중앙회가 도시조합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도농상생사업비 납부를 경감·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농협중앙회

도농상생기금 구성을 위한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와 관련하여 사업비 상한도 개정안과 같이 현행 도농상생기금 납부 수준(신용매출총이익의 3% 범위 내)¹²⁾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납부금액은 중앙회 정관으로 정하기보다 상생협력위원회에서
농산물 판매 등 도시조합 역할에 충실한 조합에 대한 차등 비율 적용,
경영 여건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검토의견

현재 도시조합은 농협중앙회 내규인 「회원조합지도·지원 규정」에
따라 도농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납부 중이지만 납부를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임.

그 결과 도시회원 중 특정조합이 2022년, 2023년 각각 3억 4,800만원,
4억원을 미납하였음.

또한, 도농상생기금에 출연된 금액은 조합에 반환의무가 있는 장기대
여금 형태로 납부되고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회원조합지도·지원 규정」

제72조의2(기금의 조성) ① 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제5항에 의거 회원
의 경제사업 손실보전을 통한 도농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농상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출연대상 회원은 전년말 총자산 1조원이상인 회원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30만명이상 시 소재 회원 중 전년말 총자산 5,000억원이상인 회원을 말한다.

③ 제2항의 출연대상 회원은 전년도 신용매출총이익의 100분의 3이내에서 기금으로
출연하되, 그 비율은 전무이사가 회원의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의
한다.<후략>

제72조의3(상생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생략>

제72조의4(기금의 운용) <생략>

제72조의5(신청 및 지원절차) <생략>

12)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3% 납부 가정 시 '23년 말 기준 약 1,343억원(조합 당 평균 6.9억원*)
을 납부하게 됨.

* (6.9억원) 도시조합 당기순이익의 15.3% 수준

제72조의6(사후관리) <생략>

제72조의7(도농상생기금의 환급) 유동성부족으로 인하여 예·적금지급불능상태가 예상되는 등 도농상생기금 환급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회원이 납입하여 조성한 도농상생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도농상생기금 vs 도농상생사업비]

구 분	회계처리	조합 소유권	환급 청구	당기손익 영향
도농상생기금	장기대여금	있 음	가 능	없 음
도농상생사업비	당기비용	없 음	불 가	있 음

※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자료('24.8.16)

이에 개정안은 도시조합에 대하여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 조달의 구속력 및 안정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다만, 구체적인 납부기준은 신용매출총이익의 3% 범위에서 도시조합의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성도 인정됨.

따라서 농식품부의 의견과 같이 중앙회가 도농상생사업비 납부를 경감·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사.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용(안 제134조의6 신설)

개정안은 중앙회가 도시조합이 납부한 도농상생사업비로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하여 도시조합과 농촌조합의 공동 수행 사업, 도시조합과 농촌조합의 상생협력 활동 등에 운용하도록 하는 등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과 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4조의6(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영) ① 중앙회는 도시조합이 도시조합 외의 조합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 2. 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의 상생협력 활동 3. 그 밖에 상생협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은 제59조의2에 따른 도농상생사업비로 조성한다. ④ 중앙회는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영계획 및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 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관계 기관 의견

가) 농림축산식품부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체계적으로 조성·운용하기 위해 중앙회가 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자금지원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자금지원 범위를 경제사업으로 인한 조합 손실 지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나) 농협중앙회

도농상생발전, 조합 간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중앙회가 도농상생사업비를 재원으로 하는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검토의견

농협중앙회는 2021년부터 도농공동사업¹³⁾을 추진하는 조합에 무이자자금을 지원¹⁴⁾하고 있으나 투자금에 대한 부담 등으로 조합 참여가 미흡한 상황임.

도농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분하고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필요하므로, 중앙회가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용계획을 수립하도

13) 사회서비스 우선 추진 사업: 도농교류, 로컬푸드, 고령인 돌봄, 보건의료, 체험관광 등

14) 자금지원(개소당): 투자금(200억원 이내), 운영자금(100), 손실보전 지원(50, 도농상생기금)

록 하고 이에 따라 도농상생지원자금을 공동사업이나 상생협력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현재 도농상생기금이 회원의 경제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금지원 범위를 경제사업으로 인한 조합 손실 지원까지 확대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회원조합지도·지원 규정」

제72조의4(기금의 운용) ① 구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회원의 경제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용도로 사용한다.

1. 농축산물의 수급불안, 가격진폭 등의 사유로 판매·유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사업 손실
 2. 태풍, 수해, 구제역 등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사업손실
 3.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제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 ② 기금은 농촌소재 회원을 대상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경우 지원대상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 ③ 회원은 지원받은 자금을 자율적으로 운용하되, 경영부실조합은 중앙회에 정기에 치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아. 상생협력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34조의7 신설)

개정안은 중앙회에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의 구성 및 심의·의결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4조의7(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중앙회에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회원조합장 16명 이내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 3. 중앙회 전무이사 소관 사업부문 집행간부 1명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1명 5. 중앙회 전무이사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1명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34조의6제4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용계획 및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계획

현행	개정안
	2. 그 밖에 도시조합의 역할 강화, 도시와 농촌 간 상호교류 추진 등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관계 부처 등 의견

가) 농림축산식품부

개정안과 같이 도농상생지원자금 조성·운용 계획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협력을 활성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나, 도농상생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현행과 같이 「회원조합지도·지원 규정」으로 상생협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농협중앙회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중앙회에 설치하는 상생협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은 호선이 아닌 중앙회 전무이사 소관인 사업부문 집행간부가 말도록 할 필요가 있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농상생사업비의 구체적인 금액도 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검토의견

개정안은 회원조합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상생협력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일선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농상생지원자금 조성·운영 계획의 심의 등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현행 「회원조합지도·지원 규정」 15)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은 회원조합장을 현행 8인에서 16인으로 확대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는 도농상생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시 일선 조합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현행 규정 및 개정안상 상생협력위원회 규정 비교]

구분	「회원조합지도·지원 규정」	개정안
설치	중양회는 도농상생기금의 원활한 운용 및 도시조합 역할 강화를 위해 상생협력위원회 운영	중양회에 도농상생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상생협력위원회 운영
구성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위원장은 조합장위원 중 호선 - 위원장 : 조합장 1인 - 위 원 : 지역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전무이사가 위촉하는 조합장 8인.	- 다음 각 호의 위원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회원조합장 16명 이내 - 농식품부장관 지정 공무원 1명 - 중양회 집행간부 1명

15) 「회원조합지도·지원 규정」 제72조의3(상생협력위원회 구성·운영) ① 중양회는 기금의 원활한 운용 및 도시농축협 역할 강화를 위해 중앙본부에 "상생협력위원회" (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손실보전 대상, 지원대상 회원 및 금액, 지원한도, 지원시기 등 기금운용과 관련한 세부사항
2. 도시농축협 역할 강화 방안, 도농상생 관련 주요 추진사업 등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위원장 : 조합장 1인(조합장위원 중 호선)
2. 위 원 : 지역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전무이사가 위촉하는 조합장 8인, 관련부서장 3인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원지원담당부서에 사무국을 운영하며, 해당부서 3급이상 팀장을 간사로 둔다.

구분	「회원조합지도·지원 규정」	개정안
	관련부서장 3인	4. 농식품부장관 추천 외부전문가 1명 5. 전무이사 추천 외부전문가 1명
심의·의결	① 손실보전 대상, 지원대상 회원 및 금액, 지원한도, 지원시기 등 기금운용 관련 세부사항 ② 도시조합 역할 강화 방안, 도농상생 관련 주요 추진사업 등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항	① <u>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용계획 및 도농 균형발전계획</u> ② 도시조합 역할 강화, 도농 간 상호교류 추진 등 도농균형발전을 위한 사항

다만, 이러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상생협력위원회는 농협중앙회에 설치하는 기구인 만큼 중앙회 전무이사 소관 사업부문 집행간부가 위원장을 맡는 것이 회의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자. 경제사업 기준 이행 현황에 따른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요구 근거 마련(안 제142조제2항)

현행법은 중앙회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 및 경제사업 기준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 개선 요구, 합병 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조치에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요구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① (생략)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 및 회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경제사업 기준에 대하여 그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u>경영 개선 요구, 합병 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며, 조치 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 ----- ----- 제59조의2에 따른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경영 개 선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 관계 기관 의견

가) 농림축산식품부

도시조합은 농업생산기반 약화 등으로 경제사업 이행이 미흡한 상

황으로 도시조합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농협중앙회

개정안에 따르면 농촌조합에도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조치가 가능해져 농촌조합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2) 검토의견

개정안은 2023년 경제사업 기준 이행 평가 결과 최저의무기준(총매출액 대비 경제매출액)에 미달하는 조합이 2022년 17개소에서 2023년 39개소로 급증하였는바,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기준 미달 조합의 급증은 2022년까지 20%로 설정되어 있던 최저기준이 2023년에 25%로 상향된 것에 기인하는 측면이 큼.

다만, 경제사업 기준의 이행 현황 평가는 도시조합뿐 아니라 농촌조합에도 적용되는 사항으로 최저의무기준에 미달하는 농촌조합에도 제재조치로서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바, 도시조합만 대상으로 하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회원조합지원자금 관련 검토(안 제136조의2부터 제136조의5 신설)

현행법은 이자지원 등의 형태로 회원을 지원하는 회원조합지원자금의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개정안은 회원조합지원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의 조성·운용, 자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자금지원심의회의 설치, 소관 사업부서에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를 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자금운용계획 및 배분 공개, 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4조(사업) ① ~ ④ (생략)	제134조(사업)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u>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u> 및 <u>조합합병지원자금</u> 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운용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른다.	⑤ ----- ----- ----- -- <u>대손보전자금</u> 및----- -----, ----- ----- ----- -----.
⑥ 중앙회는 제5항에 따른 <u>조합상호지원자금과 그 밖에 이자지원 등의 형태로 회원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	<삭 제>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36조의2(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운용) ① 중앙회는 조합상호지원자금과 그 밖에 이자지원 등의 형태로 회원을 지원하는 자금(이하 “회원조합지원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사업별 지원금액,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조합별 지원금액 산정방법 등이 포함된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회원조합지원자금은 회원의 경제사업 실적 등 정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자금지원심의회를 둔다. ④ 그 밖에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u><신설></u>	제136조의3(지원대상 선정 등) ① 회원조합지원자금 운용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자금 배정 등을 담당하는 소관 사업부서는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를 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현행	개정안
	<u>한다.</u>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결과를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성·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u>한다.</u>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 배분을 위한 선정위원회의 구성, 배분 결과의 외부 공개, 배분자금에 대한 평가·환류 체계를 마련하여 회원조합 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다만,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자금운용계획 및 배분 공개, 회원조합 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등 자금 조성·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현행과 같이 정관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만, 개정안 통과 시 자금지원 배분기준, 공개 범위 및 절차, 평가 방법 등 정관 개정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일을 수정(공포 후 즉시 → 공포 후 6개월)할 필요는 있음.

2)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지원자금은 상호부조 목적으로 중앙회 정관에 따라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지원심의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자금은 심의회 의결을 거친 연도별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자금 배분의 투명

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중앙회가 현행과 같이 정관에 따라 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금의 지원대상 및 규모 결정은 심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선정위원회 신설 시 이중 심사로 자금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이 지연되어 사업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선정위원회의 구성(외부인 과반) 및 설치단위(소관 부서별)에 대한 기준도 과도함.

즉,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직제상 19개 부서에 최대 285명의 위원을 위촉해야 함에 따라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한 의견 조율의 어려움, 과도한 운영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함.

한편,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계획 및 사업별·조합별 총 지원규모 등을 공개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회원조합지원자금은 지역조합의 균형발전과 사업활성화를 위해 운용되므로 관련 내용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지역조합에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¹⁶⁾ 상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가 부적절함¹⁷⁾.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6. <생략>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후략>

17)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 농협법에 회원조합 지원자금 지원규모 및 배분기준 등의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나. 검토의견

23년말 기준으로 중앙회의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회는 약 13조 4,000억원의 자금을 지역조합에 무이자로 지원하고 지역조합은 자금 수혜액을 유통지원, 자재지원, 복지증진 등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3년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3년 지원액		
			조합상호(B)	이차보전(C)	합계(D=B+C)
경제 사업	유통지원	농업경제 (자재사업포함)	16,973	21,137	38,110
		축산경제	15,149	3,551	18,700
		소 계	32,122	24,688	56,810
	양곡사업		0	26,540	26,540
	농기계은행사업		11,000	0	11,000
	농축협시설(저리)		0	5,012	5,012
	도농상생공동사업		0	509	509
	비계획		0	1,250	1,250
	합 계		43,122	57,999	101,121
교육 지원	합병지원		3,782	1,472	5,254
	재해지원		0	8,030	8,030
	농업인복지		4,165	0	4,165
	농업소득증진		14,205	0	14,205
	종합컨설팅		0	1,225	1,225
	합 계		22,152	10,727	32,879
총 계			65,274	68,726	134,000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 제출자료('24.8.14)

현재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은 중앙회 「정관」 및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¹⁸⁾에 따라 중앙회와 경제지주회사가 자금 규모·배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자금지원심의회가 의결하여 확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법률에 회원조합지원자금 배분기준·선정절차 관련 규정이

18)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2 참조

부재하여 자금 배분에 있어 회장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에 따라,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운용,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자금지원심의회의 설치,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 배분을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 조합별·사업별 배분 결과 외부 공개, 평가·환류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금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중앙회 정관 등 및 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 중앙회 정관 등	개정안
조성 운용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이차보전자금(회원조합지원자금)에 대하여 매년 조성·운용계획 수립	회원조합지원자금에 대하여 매년 사업별 지원금액,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조합별 지원금액 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조성·운용 계획 수립
자금 배분	자금지원심의회에서 의결한 연도별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배분	회원의 경제사업 실적 등 정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
심의회	자금지원심의회 설치	자금지원심의회 설치
자금 선정 위원회	-	자금 담당 사업부서별 지원대상·규모 결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설치(5~15명, 외부전문가 과반)
정보 공개	자금지원심의회의 의결사항은 의결 즉시 그 결과를 회원에게 공개	자금조성 및 운용계획, 사업별·조합별 지원규모, 배분기준 및 사업별·조합별 총 지원규모 등 인터넷 공개
평가 환류	-	- 자금지원 성과분석 및 평가를 매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 실시 - 성과분석 및 평가결과 자금조성·운용계획에 반영

다만, 자금지원심의회의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소관 부서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인을 과반으로 하도록 할 경우 심의회와 선정위원회의 이중 심사로 자금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또한, 자금지원은 중앙회와 지역조합이 상호부조의 목적으로 자율 조성한 자금으로 실질적인 의사결정 주체는 농협이 될 필요¹⁹⁾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제정안에 따른 자금지원심의회 및 선정위원회 비교]

구분	자금지원심의회	선정위원회
기능	▪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지원대상 및 지원 규모 등 심의·의결	▪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
구성 주체	▪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소관 사업부서별
심의회	▪ 자금지원심의회 설치	▪ 자금지원심의회 설치
위원 구성	-	▪ 5~15명(외부전문가 과반)

19)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자금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재 심의회에 5명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음.

* (농식품부장관 추천) 공무원 1인, 학계전문가 2인 / (위원장 추천) 학계전문가 2인

3. 조합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도입(안 제44조의2 신설)

개정안은 지역농협²⁰⁾이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43조(이사회) ① . ② (생략)	제43조(이사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③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간부직원의</u> 임면	6. <u>준법감시인 및 간부직원의</u> -----
7. ~ 13. (생략)	7. ~ 13.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략)	④ ~ ⑦ (생략)
<u><신설></u>	제44조의2(내부통제기준 등) ① 지역농협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지역농협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이 조에서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5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임감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도입을 의무화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을 감사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상임감사가 준법감시인을 겸임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2) 농협중앙회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2024년 1월에 농식품부고시인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를 개정²¹⁾하여 모든 지역농협에 대하여 중앙회 내규인 「준법점검기준」에 따라 개정안과 동일·유사한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점검책임자 제도를 운영 중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 지역농협에 대한 개정 내용은 제107조와 제112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에도 적용됨.

21)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3조의2(준법점검) 조합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조합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법점검책임자를 지정하고 준법점검을 실시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으나²²⁾, 지역농협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음.

그런데 최근 지역조합에서 횡령·배임 등의 금융사고가 매년 20건 이상 빈번하게 발생²³⁾하고 있음.

2022년에는 금융사고 액수가 총 140억 원에 달하였는바, 지역조합 내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조합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최근 5년간 지역농축협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건수	13	9	9	22	20	73
금액(백만원)	3,131	132	2,060	14,056	3,383	22,762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 제출자료('24.8.14)

이러한 실정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직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22)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① 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면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2024년에도 상반기에만 세 차례 배임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지난 8월 20일 160억원대 허위 대출 의혹을 받던 농협은행 직원이 감사에 불응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다만, 개정안은 준법감시인을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상임감사 중에서도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임감사는 실제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 위반 여부 등을 감사에게 보고하게 되므로, 지역조합 준법감시인 선임 대상자 중 상임감사는 제외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농협중앙회 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점검 의무화(안 제125조의4제4항 및 제5항 신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가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취약 부분을 내부통제기준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① 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면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u>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u>
<신설>	⑤ <u>중앙회는 제4항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취약 부분을 내부통제기준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u>
④ (생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기준 수립뿐 아니라 내부통제기준 적절성 파악을 위한 실태점검 및 개선 근거 마련 필요성에 공감함.

2) 농협중앙회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중앙회가 현재 내규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매년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중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회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함(제125조의 4).

또한,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 위반을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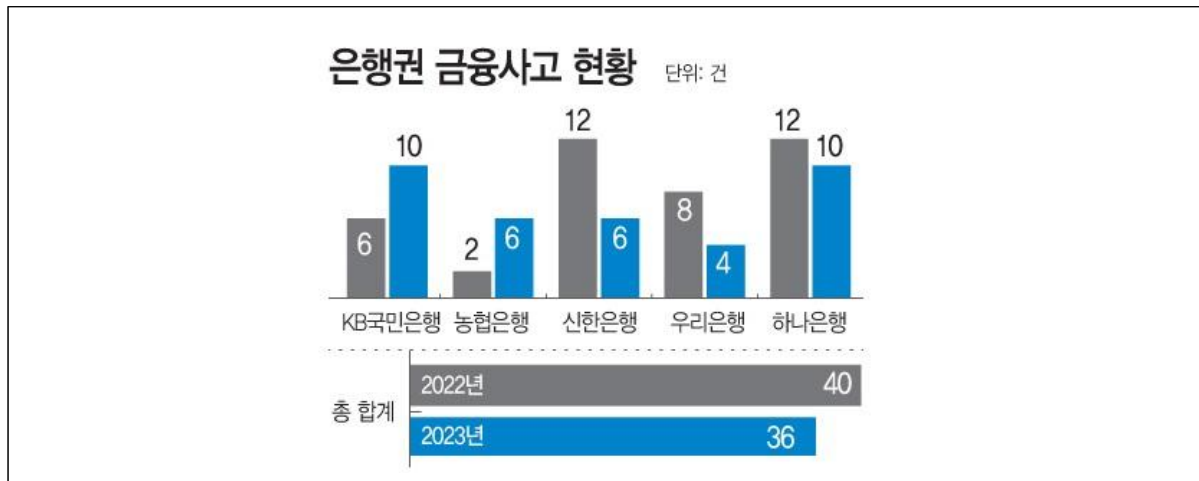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농협중앙회 내부통제규정’, ‘농협중앙회 감사규정’, 및 ‘농협중앙회 감사업무준칙’ 등의 내규²⁴⁾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점검·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음.

최근 은행권에서 연이은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24) 내규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3 참조

따라 농협중앙회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은행권 금융사고 현황]



※ 자료: 은행연합회

이에 개정안과 같이 농협중앙회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파악을 위한 실태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미비점 개선을 위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5)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을 점검하도

2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① 금융회사의 임원(해당 금융회사의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을 포함하며, 금융회사의 자산규모, 담당하는 직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을 제외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3 및 제35조의2에서 같다)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이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등"이라 한다)이 적절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2. 내부통제기준등이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3. 임직원이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알게 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등에 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준하는 조치로서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조치

록 하고, 내부통제등에 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5.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안 제45조제5항 등)

현행법은 조합장을 ①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 ② 대의원회가 선출, ③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하는 3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지역조합의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일원화하되, 품목조합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1조(총회 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1조(총회 의결의 특례) ①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45조제5항제1호에 따른 조합장의 선출	2. 제45조제5항----- -----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 ④ (생략)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⑤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	
2. 대의원회가 선출	

현행	개정안
3.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 ⑥ ~ ⑩ (생략)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 ③ (생략) ④ 지역농협은 제4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⑤·⑥ 삭제 ⑦·⑧ (생략) 제54조(임원의 해임) ① (생략) ② 조합원은 제45조에 따른 선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생략) 2.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이사회회의 해임 요구에 따라 총회에서 해임 의결. 이 경우 이사회의 해임 요구와 총회의 해임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한다. 3. (생략) ③·④ (생략) 제112조(준용규정) ①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45조제5항----- ----- ----- ----- ----- ----- -----. ⑦·⑧ (현행과 같음) 제54조(임원의 해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2조(준용규정) ① ----- ----- -----

현행	개정안
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9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으로, “농산물”은 “농산물 또는 축산물”로 보고, 제24조의2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28조제5항 중 “제19조제1항”은 “제110조제1항”으로, 제30조제1항제1호의2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49조제1항제12호 중 “제57조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제78조제4항(제10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11조제6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5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57조제6항	----- ----- -----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 -----제58조,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 ----- ----- ----- ----- ----- -----제45조제5항 중 “선출한다”를 “선출하는 방법, 대의원회가 선출하는 방법,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하는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선출한다”로, 제49조제1항제12호 ---로, 제51조제4항 중 “제45조제5항에 따라 선출하는”을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및 대의원회가 선출하는 방법에 따른”으로, 제54조제2항 중 제2호를 “2. 이사회에서

현행	개정안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8조제1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가목·사목·아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11조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마목·사목, 제4호(복지시설의 운영에만 해당한다), 제6호 및 제9호”로, 제59조제2항제1호 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재배사업 또는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11조제1호”로, 제80조 중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은 “합병 또는 분할”로 본다. ② (생략)	<u>선출된 조합장: 이사회의 해임 요구에 따라 총회에서 해임 의결. 이 경우 이사회의 해임 요구와 총회의 해임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절차수를 준용한다.”</u>로, 제57조제2항--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협중앙회

조합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일원화하여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하
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조합장의 선출방식은 각 조합의 여
건 등을 감안하여 조합원 자유훈로 선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수협, 산림조합 등 유사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검토의견

현재 1,032개 지역조합(지역농협 916, 지역축협 116)의 조합장 선출방식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조합이 총회에서 조합장을 직접 선출하고 있고, 5개 조합만²⁶⁾이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고 있으며, 이사회 호선으로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은 없음.

[선출 방식에 따른 조합 비율]

구분	조합원 직선	대의원 간선	이사회 호선	계
조합수(비율)	1,027(99.5%)	5(0.5%)	-	1,032(100%)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 제출자료('24.8.14)

개정안과 같이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직선제로 일원화할 경우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대의원회 선출(간선제)과 이사회 선출(호선제)은 선거 과열 등 직선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임원선출의 효율성 제고²⁷⁾ 및 조합원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각각 1994년 및 1999년에 도입²⁸⁾된 점과,

현재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조합도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직선제로 전환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6) 지역농협 3(남서울, 관악, 서서울농협), 지역축협 2(부산, 서울축협)

27) (부작용 최소화) 선거인이 전체 조합원에서 대의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금품제공 등 불법선거 문제, 선거과열 문제 등 최소화, (효율성 제고) 투표소 설치, 선거인 명부 정비 등 직선제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및 선거 관련 투입 인력·예산 절감 등

28) (연혁) [~'88] 임명제 → ['88] 직선제 → ['94] 간선제 도입 → ['99] 호선제 도입

6.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제한 도입(안 제48조제1항)

현행법은 상임 조합장에 대하여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도 2차례에 한하여 연임을 제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u>조합장(상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u> 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8조(임원의 임기) ① ----- ----- ----- 조합장----- ----- -----. ----- ----- -.
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 2. 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 2년 ②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제3조(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비상임조합장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그 첫 번째 임기로 본다.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① 비상임 조합장은 상임 조합장에 비해 신용사업 등 일부사업 집행은 제한²⁹⁾되지만 조합 대표권, 직원 임면권 등을 통해 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 ②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타 조합은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일정 횟수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상임 조합장에 대한 연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농협중앙회

① 조합의 자율적인 임원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하는 점, ②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해 다선조합장의 풍부한 경험과 능력이 필요한 점, ③ 상임조합장에 비해 업무 권한이 적은 비상임조합장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④ 비상임 조합장 의무 도입 이전에 자율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연임을 제한하지 않았던 당초 입법취지³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서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에 신중하여야 함.

나. 검토의견

현재 조합장은 상임조합장과 비상임조합장으로 구분됨.

상임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2차례로 제한되고, 비상임조

29) 비상임조합장을 두는 조합은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이 상임이사에게 있으나, 비상임조합장 의무 도입 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 교육지원사업을 집행함.

30) 상임조합장의 연임 제한('05) 및 자산규모가 2,500억원이 넘는 조합에 대한 비상임조합장 의무도입('09)은 농축협 규모화에 따른 경영 전문화를 위한 것으로 조합장 비상임화 유도를 위해 비상임조합장에 대해서는 연임 제한을 두지 않았음.

합장은 연임에 제한이 없음.

현행법 제45조제4항에 따르면 자산총액(조합장 임기개시일 이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5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임 조합장을 의무적으로 도입³¹⁾하도록 하고 있고, 2,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장의 상임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현행법 제46조³²⁾에 따르면 상임 조합장은 상임이사 위임·전결업무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수행함.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 자산총액 2,500억원 이상이면 신용사업(상임이사 수행)을 제외한 사업을 수행하고, 자산총액 2,500억원 미만이면 업무집행이 불가능하여 비상임 조합장은 그 권한이 상임 조합장보다 적은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31)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지역농협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하며,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이내를 상임(常任)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지역농협과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어야 한다.

③ <생략>

④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한다

32) 제46조(임원의 직무) ①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제45조제4항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의 사업(같은 항 제3호의 신용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제외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

[상임·비상임조합장의 업무범위]

자산총액	조합장	업 무	비 고
2,500억원 이상 (564개)	상임(42개)	○모든 사업 - 단, 상임이사 위임·전결업무 제외	비상임조합장 미도입 ³³⁾
	비상임(522개)	○신용사업을 제외한 사업 중 전부 또는 일부 - 상임이사가 신용사업 등 수행	비상임조합장 도입
2,500억원 미만 (547개)	상 임(505개)	○모든 사업 - 단, 상임이사 위임·전결업무 제외	정관에서 상임·비상임 결정(자율도입)
	비상임(42개)	○업무집행 불가 - 상임이사가 업무집행	
합계 (1,111개)	상임(547개)		
	비상임(564)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 제출자료('24.8.14)

다만,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마찬가지로 지역조합의 대표
권자³⁴⁾로서 직원임면권³⁵⁾ 행사 등³⁶⁾을 통하여 조합에 실질적인 영향
력을 발휘해 상임조합장과 권한 행사에 있어 차이가 없는 반면, 그에
따른 책임은 적다고 보는 시각들이 존재함.

개정안은 조합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33) 농식품부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2,500억원 이상임에도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하지 않은 조합
은 총회 의결 등 절차 지연, 대의원 설득 미흡 등으로 상임조합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
이며, 해당 조합에 대하여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하도록 중앙회와 지도 중임. 미이행 시 업적
평가 감점, 조합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함.

34) 제46조(임원의 직무) ①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
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제45조제4항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
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의 사업(같은 항 제3호의 신용사업과 이와 관련되
는 부대사업은 제외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

35) 제56조(직원의 임면) ① **지역농협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는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한다.

② 지역농협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회장이 실시
하는 전형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36) 그 밖에 회의소집권(제43조제2항), 회의체 구성권(제43조제2항), 의장으로서의 직무권한(제
46조제3항), 의안부의권(제35조제1항제11호, 제43조제3항제13호) 등을 행사함.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비상임 조합장이 장기간 연임하면서 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실제 비상임 조합장의 선임 횟수를 살펴보면, 2023년 12월 기준 비상임조합장을 두고 있는 564개소 중 182개소 조합(32.3%)은 초선인 비상임 조합장이고 106개소(18.8%)가 4선 이상인 비상임조합장을 두고 있으며 최다선 조합장은 무려 11선에 이르고 있음.

[비상임조합장 선임 횟수]

(단위 : 개, %)

구분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10선	11선	합계
조합수	182	177	99	63	27	10	6	1	1	564
구성비	32.3	31.4	17.5	18.8	4.1	1.8	1.1	0.18	0.18	100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 제출자료('24.8.14)

한편, 4선 이상 재임 중인 비상임조합장의 선수별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통상 70세 내외로 대동소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비상임조합장 선수별 평균연령]

구 분	4선	5선	6선	7선	8선	9선	10선	11선	계
평균연령(세)	68	69	69	70	-	-	71	80	69세
조합 수(개)	63	27	10	6	-	-	1	1	108개

※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자료('24.8.14)

농협중앙회는 비상임 조합장의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연임을 제한하지 않았던 당초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의 조합에 대한 비상임 조합장 의

무 도입은 2009년에 이루어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연임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를 시정함으로써 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담보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타 조합의 경우 상임 조합장에 대해서 모두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을 제외하면 수협³⁷⁾의 경우 1차에 한하여, 새마을금고, 신협³⁸⁾의 경우 2차에 한하여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타 조합의 조합장(이사장) 연임 제한 사례]

구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상임조합장	2차 연임	2차 연임	2차 연임	2차 연임	2차 연임
비상임조합장	제한 없음	1차 연임	제한 없음	2차 연임	2차 연임

한편, 개정안은 부칙 제3조³⁷⁾에서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비상임조합장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그 첫 번째 임기로 본다”고 규정함.

그 결과 2023년 3월 동시선거를 통해 선출된 비상임 조합장은 이 법 시행 이후 적용을 받게 됨.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2024년 9월 기준 향후 최대 14년 이상 재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37) 제3조(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비상임조합장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그 첫 번째 임기로 본다.

7. 중앙회 이사에 경제·금융지주 대표 추가(안 제125조제2항제6호 신설)

현행법은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및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한 이사 28명 이내와 감사위원 5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사회에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도 포함시키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3. <u>임원(제12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이사는 제외한다)</u> ----- -----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제125조(이사회) ① (생략)	제125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② ----- ----- ----- ----- -----.
1. 회장	1. ----
2. 삭제	2. ----
3. 삭제	3. ----
4. 상호금융대표이사	4. -----
5. 전무이사	5. -----

현행	개정안
<u><신설></u> ③ ~ ⑦ (생략) 제126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및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한 이사 28명 이내와 감사위원 5명을 둔다. ② (생략)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u><단서 신설></u> ⑤ (생략) ⑥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 나.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 ③ ~ ⑦ (생략) 제126조(임원) ① ----- ----- -----1명, 제12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이사 3명을-----31명-----. ② (현행과 같음)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다만, 제125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이사는 제161조의3제2항에 따라 선임된 사람으로 하고, 제125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이사는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임원 선임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 -----

[illegible]

[illegible]

현행	개정안
제90조제2항제1호 중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는 “제1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 ----- ----- -----.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자회사 임원을 모회사의 임원으로 겸직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 당초 농협 사업구조를 개편한 것은 경제·금융 지주 각 법인의 경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농협중앙회

① 농협 사업구조 개편으로 종전에 중앙회의 이사였던 신용대표이사(2012년)와 농업경제·축산경제대표이사(2017년)를 중앙회 이사회의 구성원에서 배제한 것은 각 법인의 독립성 및 책임경영의 강화를 위한 조치였다는 점, ② 지주회사 대표이사 등 주요 계열사 임원들은 중앙회 이사회에 참여하여 현안을 공유하고 관련 안전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임.

나. 검토의견

농협 조직의 구성을 살펴보면, 2024년 8월 1일 기준 ① 총 1,111개의 농축협조합 등과 ② 농축협조합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협중앙회,

2012년, 2017년 각각 중앙회에서 분리된 ③ 농협금융지주와 ④ 농협경제지주로 구성되어 있음³⁸⁾.

[농협 조직의 구성]



※ 자료: 농협 홈페이지

38) 당초 농협중앙회에서 금융지주와 경제지주가 분리된 배경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가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경제사업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에 따라 1990년대 중반부터 사업구조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특히 농산물 시장개방 및 농산물 수급불안정 등으로 농업·농촌·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농산물 유통 혁신 및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역할이 요구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사업 경쟁력 약화로 사업구조개편의 시급성이 대두됨에 따라 농협·학계·농업계 등을 포함한 ‘농협개혁위원회’가 구성(’08.12월)됨. 농협개혁위원회는 지주회사 체제, 연합회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한 15차례 회의를 통해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 추진방안’ 확정하여 정부에 건의(’09.3월)하였으며, 정부는 농협개혁위안, 농민단체 지역설명회 및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여 및 국회 제출(’09.12월)하였음. 이에 경제·금융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협중앙회를 ‘1중앙회-2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경제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농협법 개정(’11.3.31 공포, ’12.3.2 시행)이 이루어짐.

또한, 중앙회 이사회는 중앙회장, 상호금융대표이사, 전무이사, 조합장 이사(18명), 사외이사(7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개정안은 경제·금융대표이사를 중앙회의 임원이자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켜 중앙회로의 권한 집중을 막고 중앙회와 계열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각 법인의 독립성 및 책임경영의 강화를 위하여 경제·금융지주를 중앙회에서 분리한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취지와 함께,

별도의 선출 절차 없이 지주회사 대표이사를 중앙회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도록 할 경우 총회(대의원회)의 임원 선출권³⁹⁾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특히 현재 축산경제대표는 이 법 제161조의3제2항⁴⁰⁾에 따라 축협조

39) 「농업협동조합법」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제12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두 표까지 행사한다.

②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은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담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원조합장인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출된 시·도 단위 지역농협의 대표와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추천절차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40) 제161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는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하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② 농업경제대표이사 또는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제134조제1항제2호의 농업경제사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축산경제사업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의 전체 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한 조합장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定數)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 전체 조합장 수의 5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합장대표자회의에서 단수로 추천한 자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⁴¹⁾ 소수의 지역대표 축협조합장들이 중앙회의 임원을 선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41) 농·축협 통합 당시 축산경제의 전문성·독립성 보장을 위해 축산경제대표이사에 대해서 임원선출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농협법에 반영한 것임. 이후 사업구조개편 논의과정에서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임원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등 축산특례를 약화·폐지하는 정부안이 두 차례 발의('09.12.16., '16.10.14.)되었으나, 국회심사 결과 종전 수준의 특례를 유지하고 있음.

8. 집행간부의 이사회 의견 진술 관련 규정 정비(안 제43조제6항, 제125조제6항 및 제125조의2제7항)

현행법은 “간부직원이나 집행간부(이하 ‘간부직원등’이라 함)는 이사회나 소이사회(이하 ‘이사회등’이라 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이사회등은 간부직원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3조(이사회) ① ~ ⑤ (생략) ⑥ <u>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u> ⑦ (생략)	제43조(이사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이사회는 간부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u> ⑦ (현행과 같음)
제125조(이사회) ① ~ ⑤ (생략) ⑥ <u>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u> ⑦ (생략)	제125조(이사회) ① ~ ⑤ (생략) ⑥ <u>이사회는 집행간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u> ⑦ (생략)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① ~ ⑥ (생략) ⑦ <u>집행간부는 소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u> ⑧ (생략)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소이사회는 집행간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u> ⑧ (현행과 같음)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간부직원(집행간부)의 의견진술권에 대해서는 법률별로 규정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은 현행 「농협법」과 동일하게 간부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협동조합법」, 「상법」은 이사회가 간부직원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농협중앙회

이사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므로 법률 개정 없이도 필요시 간부직원에게 출석·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이사회 기능의 원활히 하고자 하는 간부직원의 의견진술권 취지를 고려하여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나. 검토의견

현행 규정은 이사회등이 필요할 경우 간부직원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구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럼에도 간부직원등이 자율적으로 이사회등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석될 소지가 있음.

조문의 취지와 이사회 요구가 있을 경우 집행임원을 출석하도록 한 「신용협동조합법」, 「상법」⁴²⁾상 입법례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이사회등이 필요할 때 간부직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 42) 「상법」 제408조의6(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①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집행임원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이사회가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대표집행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집행임원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9. 임원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신설(안 제125조의5)

현행법은 사업전담대표이사등, 회원조합장인 이사 외의 이사 등을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은 이사회 위촉 회원조합장 3명 및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정관 및 내규에서 정하고 있던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 회의의 소집, 의결요건, 임원후보자의 모집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u>인사추천위원회</u> 를 둔다.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① ----- ----- <u>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u> -----
1. 제130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	1. (현행과 같음)
2. 제130조제4항에 따라 선출되는 이사	2. (현행과 같음)
3. 제129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3. (현행과 같음)
4. 제144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장	4. (현행과 같음)
② <u>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u> , 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u>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임원후보자”라 한다)이 임기만료나 사임 등의 사유로 궐위되어 새로이 선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u>

현행	개정안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 2.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4명 ③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지체 없이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u> ----- ----- 1.(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 후 임원후보자가 임원으로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u> <u>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위원 중 최연장자가 소집한다.</u> <u>⑥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u> <u>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u>⑧ 위원은 본인을 임원후보자로 추천하는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u> <u>⑨ 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원후보자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u> <u>⑩ 위원회는 응모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접심사 대상</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신 설></u> ④ (생략)	자를 결정한다. ⑪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임원후보자 심사기준을 정하고 임원후보자를 심사한다. 1. 임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2. 농업 및 농협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3. 조직관리 능력 및 전략적 사고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4. 윤리관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⑫ 위원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와 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⑬ (현행과 같음)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임원 인사추천위원회의 세부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기관의 내부규정으로 규율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로 판단되며, 타 협동조합 및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인사추천위원회 관련 세부절차를 하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 농협중앙회

중앙회는 자조조직인 협동조합으로서 「대한민국 헌법」과 「농업협동조합법」⁴³⁾에서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협동조합 내 회의체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임원 후보자 공개모집 의무화 시 후보자 난립, 경쟁과열 등으로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인사검증기능 약화 우려가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임원 후보자의 공개모집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또한, 2021년 4월 법률 개정⁴⁴⁾을 통해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원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하고,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 바 있음.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임원 인사의 비밀주의가 관행으로 지속되고,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해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제안된 것으로,

인사추천위원회 관련 사항을 현행 중앙회 정관 및 중앙회 내규인 인사추천위원회규정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43) 「대한민국헌법」 제123조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4)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

2.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4명

다만, 개정안은 정관 및 인사추천위원회규정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하였음⁴⁵⁾.

[현행 정관 등 및 개정안 비교]

구 분	현 행(중앙회 정관 등)	개정안(농협법)
소 집	■ 위원장이 소집. 단, 구성 후 최초회의는 이사회의장 이 소집	■ 위원장이 소집. 단, 구성 후 최초회의는 위원 중 최연장자 가 소집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 <신 설>	■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 임원후보자인 위원의 의결권 제한
후보자 모집	■ 공개모집 가능	■ 공개모집 의무화

현행 중앙회 정관 등에 따르면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는 이사회 의장인 회장이 소집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인사 추천 과정에서 중앙회장의 영향력 행사로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⁴⁶⁾가 있었음.

이에 개정안은 첫 회의를 위원 중 최연장자가 소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회의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의무화**와 관련하여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의 임원후보자 공개모집을 재량사항으로 규정⁴⁷⁾하고 있는 점,

금융회사의 경우도 공개모집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전문성 제고와 경영 공백 방지를 위해 내부규정으로 지속적인 후보군 관리와 임원후보자 교육에 대해 규정하고, 업무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외부에서

45) 중앙회 정관 및 내규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4 참조

46)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하여 인사추천위원회의 신속한 소집을 통해 원활한 임원 선임을 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④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임원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⁴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개정안은 위원회 임기, 위원장 유고 시 직무대행, 심사기준,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와 관련하여서는 통상 법률에서 위원회의 근거 규정, 위원 정수, 위원의 자격·임기 등에 대해 규정하고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 농협중앙회는 자율적 활동을 보장받는 자조조직(自助組織)⁴⁹⁾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있어 일정 부분 자율성이 인정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48) <우리금융그룹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2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

②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는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3. 그 밖에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34조(최고경영자 후보의 추천절차)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주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지주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하나금융그룹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0조(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2. 주요 관계회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수립, 후보군 관리 및 자격요건 검증에 관한 사항

제34조(임원후보자의 선정과 교육) ① 회사는 직원 중에서 업적과 역량 등을 고려하여 핵심인재 후보군을 선정하고 이를 임원 선임시에 참고한다.

② 회사는 직무특성에 따라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에서 임원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장기 경쟁력 강화 및 지속성장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임원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그 평가결과를 임원 선임 및 연임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9) 「대한민국헌법」 제123조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인사교류심의회 관련 규정 신설(안 제131조의2 신설)

개정안은 중앙회와 지주회사간, 지주회사 상호간, 중앙회 사업부문간 인사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업경제대표이사를 의장으로 하는 인사교류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심의회의 구성, 심의사항, 의결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1조의2(인사교류심의회) ① 중앙회와 지주회사간, 지주회사 상호간, 중앙회 사업부문간 인사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교류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농업경제대표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1. 농업경제대표이사 2. 사업전담대표이사등 3. 제1호 소속의 인사담당 집행간부 4. 제2호 소속의 인사담당 집행간부 5. 제161조의10에 따라 설립된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인사담당 집행간부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앙회와 지주회사간, 지주회사 상호간, 중앙회 사업부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인사교류 대상직급,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교류규모

현행	개정안
	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의회는 중앙회와 지주회사간, 지주회사 상호간, 중앙회 사업부문간 인사교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인사교류 기본방침 심의 시 참고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와 지주회사 간, 지주회사 상호 간 인사교류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없으며, 「상법」에서도 주식회사인 계열사 간 인사교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농협중앙회

인사교류는 임원추천과 마찬가지로 경영여건이나 인력운영현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주식회사인 계열회사 간 인

사교류에 대하여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례는 없음.

나. 검토의견

농협중앙회 내규인 인사규정⁵⁰⁾에 따르면 중앙회 사업부문 간 인사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무이사를 의장으로 하는 인사교류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회는 매년 정기인사 시(12월) 중앙회 내 사업부문 간 인사교류를 위하여 인사교류심의회를 연1회 개최하고 있고, 법인 간 인사교류는 대표 간 협의를 통해 실시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재 중앙회 정관 및 인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사교류 심의회 관련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심의회 심의 대상 인사교류의 범위를 ‘중앙회 사업부문간’에서 ‘중앙회와 지주회사간, 지주회사 상호간, 중앙회 사업부문간’으로 확대하는 한편, 심의회의 의장 및 구성을 인사규정과 달리 정하고 있음.

50) 「농협중앙회 인사규정」 제83조(인사교류심의회 설치) 사업부문간 인사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교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4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전무이사,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대표이사소관 인사담당 집행간부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전무이사로 하고, 간사는 전무이사소관 인사담당부서장이 된다.

제85조(심의회의 기능)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부문(지역본부 사업부문 포함)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2012.3.2. 개정)
2. 인사교류 대상직급, 대상자 선정기준 및 교류규모(2012.3.2. 개정)
3. 그 밖에 의장이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세부사항은 별도 인사방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85조의2(인사교류 수요조사) 전무이사는 사업부문간 인사교류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인사교류 기본방침 심의시 참고한다.(2012.3.2. 신설)

제86조(심의회의 의사)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행 중앙회 인사규정 및 개정안 비교]

구 분	현 행(인사규정)	개정안(농협법)
심의 대상	■ 사업부문간 인사교류	■ 중앙회와 지주회사간, 지주회사 상호간, 중앙회 사업부문간 인사교류
구성	■ 전무이사 ■ 상호금융대표이사, ■ 중앙회 인사담당 집행간부 ■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 소속 인사담당 부서장	■ 농업경제대표이사 ■ 전무이사, ■ 상호금융대표이사 ■ 중앙회 인사담당 집행간부 ■ 지주회사 인사담당 집행간부
의장	■ 전무이사	■ 농업경제대표이사

최근 언론에서 금융 분야 전문성이 부족한 농협중앙회 출신 인사를 농협금융지주 계열사 경영진으로 추천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⁵¹⁾가 있었고, 잇따라 터진 농협 금융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중앙회와 금융지주 간 원칙 없는 인사 이동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당국도 농협중앙회에서 금융계열사로 임원 또는 직원이 이동할 때 금융 전문성 등을 요구하고 객관적인 선임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개정안은 인사교류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농협중앙회와 지주회사 간, 지주회사 상호 간 인사교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지주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는데 주식회사의 계

51) 지난 3월, 농협중앙회 회장이 NH투자증권 사장직에 금융 분야 전문성이 없는 전직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추천하여 문제가 된 바 있음.

열사 간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회를 열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임.

또한, 중앙회와 지주회사 간 인사교류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11. 운영협의회 관련 규정 신설(안 제125조의7 신설)

개정안은 지역농정협력활동과 회원 간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농협중앙회에 회원조합장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25조의7(운영협의회)의 설치·운영)</u> ① <u>지역농정협력활동과 회원 간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중앙회에 운영협의회를 둔다.</u> ② <u>운영협의회는 회원조합장으로 구성한다.</u> ③ <u>운영협의회는 특정한 회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u> ④ <u>운영협의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u> ⑤ <u>그 밖에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u>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협중앙회

중앙회는 정관 제119조 및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 제68조⁵²⁾에 따라 조합운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운영협의회, 품목별 협의회, RPC운영전국협의회 등 조합장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내부적으로 운영 중이므로, 농협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체는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구성·운영될 수 있어야 함.

나. 검토의견

현행 중앙회 「정관」 및 내부규정인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은 지역농정협력활동과 회원 간 상호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해 중앙회에 회원조합장으로 구성하는 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도 단위 협의회 16개, 축산협의회 10개, 품목협의회 5개, 시군협의회 136개를 합하여 모두 167개의 협의회가 설치·운영 중임.

2022년 1월에서 2024년 7월말 기간 중 협의회별 개최 건수는 평균 18회로 나타남.

개정안은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운영협회의 설치 근거와 회의록 공개 근거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규정함으로써 운영협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52) 구체적인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 내용은 참고자료5 참조

[현행 중앙회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 등 및 개정안 비교]

구 분	현 행	개정안(농협법)
설치	지역농정협력활동과 회원 간 상호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해 본회에 운영협의회를 두고, 본회의 도·시·군 단위의 지사무소에 설치	지역농정협력활동과 회원 간 상호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해 중앙회에 운영협의회를 둠
구성	회원조합장으로 구성	회원조합장으로 구성
운영	-	특정회원에 의해 부당하게 심의·의결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
회의	회의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비치	회의 일시, 장소,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공개

이와 관련하여서는 농협 운영에 필요한 회의체의 경우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법률 상향 및 회의록 공개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명칭의 대가로 부과하는 농업지원사업비의 부과율 상한을 현행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5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88 —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지역조합 등에 대한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하여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2) 농협중앙회

농업지원사업비 증대를 통한 농업·농촌·농업인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나, 계열사의 매출 성장으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액은 지속 확대되었고, 금융계열사의 최근 3개년 평균매출액 증가로 농업지원사업비가 대폭 증가할 예정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에 따라 농협은행의 부담액이 급증할 경우 재무악화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자본비율 하락에 따른 배당제한, 감독당국의 제재 등 사업 수행에 차질 우려가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검토의견

농업지원사업비는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에 대하여 명칭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협중앙회에서도 본연의 지도·경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자회사(수협은행 등)에 명칭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음⁵³⁾

현행법에서 농업지원사업비의 부과율을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0

5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2조의2

00분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중앙회 정관 제1조의2제3항은 매출액(직전 3년의 평균) 규모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총회에서 정한 부과율에 해당 법인의 매출액을 곱한 금액을 농업지원사업비로 정하고 있는데 부과율 상한은 농업지원사업비 규정이 신설된 2012년부터 2.5%로 유지되었음.

「농협 중앙회 정관」

제1조의2(농업지원사업비)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지원사업비는 매출액(부과율을 정하기 직전 3년의 평균을 말한다.이하 이조에서 같다)규모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총회에서 정한 부과율에 해당 법인의 매출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매출액 10조원 초과 : 1,000분의 15 초과에서 1,000분의 25 이하
2. 매출액 3조원 초과에서 10조원 이하 : 1,000분의 3 초과에서 1,000분의 15 이하
3. 매출액 3조원 이하 : 1,000분의 3 이하

현재 실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 비율은 계열사의 매출액에 따라 2.5%의 범위 내에서 매년 사업계획 수립 시 총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있음.

[계열사별 매출액 규모에 따른 부과율 범위]

그룹	해당 계열사	매출액	부과율 범위(%)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1그룹	은행, 투자증권 등	10조원 초과	0.5 ~ 1.5	1.5 ~ 2.5
2그룹	보험사, 경제지주 등	3조원 ~ 10조원	0.3 ~ 0.5	0.3 ~ 1.5
3그룹	기타	3조원 이하	0.3 이하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 제출자료('24.8.14)

2022년 및 2023년 농업지원사업비 부과한 현황은 다음과 같음.

[계열사별 매출액 규모에 따른 부과율 범위]

(단위: 억원)

구 분		'22년		'23년	
		부과율	부과액	부과율	부과액
금융 지주	N H 농 협 은 행	2.50%	324,670	2.50%	330,604
	N H 농 협 생 명	1.50%	45,041	0.83%	79,155
	NH농협손해보험	1.50%	23,973	0.45%	23,804
	N H 투 자 증 권	0.51%	55,018	0.51%	57,206
	NH-Amundi자산	0.30%	190	0.30%	215
	N H 선 물	0.30%	130	0.30%	144
	N H 농 협 캐 피탈	0.30%	1,136	0.30%	1,201
	N H 저 축 은 행	0.30%	278	0.30%	296
	N H 리 츠 운 용	0.30%	12	0.30%	12
	N H 벤 처 투 자	0.30%	1	0.30%	2
	NH헤지자산운용	0.30%	41	0.30%	75
	소 계		450,490		492,714
경제 지주	농 협 경 제 지 주	0.31%	23,333	0.31%	24,768
	농 협 하 나 로 유 통	0.30%	3,340	0.30%	3,418
	농 협 유 통	0.30%	5,096	0.30%	4,956
	남 해 화 학	0.30%	3,440	0.30%	3,649
	농 협 케 미 컬	0.30%	594	0.30%	623
	농 우 바 이 오	0.30%	269	0.30%	291
	농 협 에 코 아 그로	0.30%	114	0.30%	123
	농 협 식 품	0.30%	141	0.30%	173
	농 협 양 곡	0.30%	341	0.30%	352
	농 협 흥 삼	0.30%	193	0.30%	175
	N H 농 협 무 역	0.30%	1,163	0.30%	1,263
	농 협 물 류	0.30%	1,274	0.30%	1,338
	오 리 온 농 협	0.30%	82	0.30%	106
	농 협 사 료	0.30%	3,868	0.30%	4,309
	농 협 목 우 촌	0.30%	1,782	0.30%	1,926
	농 협 티 엠 알	0.30%	64	0.30%	76
	소 계		45,094		47,546
교육 지원	농 협 네 트 워크스	0.30%	1,017	0.30%	1,068
	농 협 자 산 관 리	0.30%	733	0.30%	743
	농 협 정보 시스템	0.30%	716	0.30%	766
	농 협 파 트 너 스	0.30%	544	0.30%	570
	소 계		3,010		3,147
합 계			498,594		543,407

한편, 이에 따라 부과하는 농업지원사업비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농업지원사업비 수입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획)
농업지원 사업비	금융	3,858	4,136	4,281	4,460	4,505	4,927	6,111
	그외	445	453	460	472	481	507	556
	계	4,303	4,589	4,741	4,932	4,986	5,434	6,667

※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자료('24.8.14)

또한, 5대 주요 계열사의 매출액(영업수익)⁵⁴⁾ 및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액을 살펴보면,

농협은행은 농지비 부과액이 매년 증가하여 2023년에 3,300억원을 납부하였고, 그 다음으로 농협생명(792억원), NH투자증권(572억원), 농협경제지주(248억원), 농협손해보험(238억원)순으로 농업지원사업비를 많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남.

[5대 주요 계열사 매출액 및 농지비 납부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영업 수익)	농지비 부과액	매출액 (영업 수익)	농지비 부과액	매출액 (영업 수익)	농지비 부과액	매출액 (영업 수익)	농지비 부과액	매출액 (영업 수익)	농지비 부과액
농협은행	130,586	2,997	137,747	3,041	128,392	3,156	178,110	3,247	219,953	3,306
농협생명	95,722	761	96,700	799	93,678	788	112,094	450	37,306	792
NH투자증권	111,255	258	122,864	280	102,387	304	120,588	550	108,500	572
농협경제지주	76,440	144	75,546	153	87,702	165	105,068	233	98,228	248
농협손해보험	49,133	108	55,936	149	53,622	196	56,016	240	44,753	238

※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자료('24.8.14)

개정안은 농협은행의 영업이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은 2012년과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바, 농업지원사업비

54) 금융계열사(은행, 생명, 보험, 증권)는 영업수익 기준으로 농지비 부과

부과율 상한을 상향함으로써 회원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다만, 농업지원사업비는 부과율 상향 없이도 계열사의 꾸준한 매출 성장으로 그 부과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⁵⁵⁾, 농지비 부담 증가에 따른 농협은행 등의 재정건전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부과율 상한 상향 폭과 시기를 결정할 필요도 있어 보임.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단순기본자본비율 5% 권고하고 있는데 현재 농협은행은 4.82%로 20개 은행 중 최하위에 속함.

또한,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부과율을 5%로 최대 적용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단순기본자본비율이 2029년부터는 4.0%를 하회하고, 자기자본비율(BIS)은 2028년부터 자체정상화계획⁵⁶⁾ 발동지표(14.5%)를, 2029년 이후 규제비율(13.5%)을 하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⁵⁷⁾.

[부과율 5% 적용 시 자본적정성비율 추정(%)]

비율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BIS총자본	16.31	15.47	14.59	13.82	13.12	12.50	11.94	11.44	11.10
단순기본자본	4.50	4.34	4.20	4.08	3.97	3.87	3.80	3.73	3.72

* 자본비율은 배당성향 50%, 별도의 유상증자는 없으며 위험가중자산은 '23년 성장률 적용 가정

※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자료('24.8.14)

55)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업지원사업비 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농협은행의 경우 '25년 부담액 ('21~ '23 영업수익 기준) 약 680억원(3,700억원 → 4,380억원) 증가가 예상됨.

56) 재무위기에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으로 금융위 보고 및 승인사항

57) 자체정상화계획 발동 시 「배당제한·농지비감면요청」 등 정상화 수단을 실행할수 밖에 없고, 규제비율 미준수 시 「영업정지 등 감독당국의 제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농협중앙회의 설명임.

13.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사항 규정(안 제161조의7제1항 후단 및 제7항 신설)

현행법은 농식품부장관에게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의 평가·점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의 평가 시에 조합과 조합원의 편익증대, 조합과의 상생발전 등과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1조의6제1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연 1회 이상 평가·점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① ----- ----- ----- ----- -----, 이 경우 조합과 조합원의 편익증대, 조합과의 상생발전 등과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신설>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농림축산식품부

조합 및 조합원의 편익증대, 경제지주 및 조합의 상생발전 등은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들로 개정안과 같이 평가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나. 검토의견

현재 농식품부장관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평가하고 있는데, 농협경제사업 실무협의회 및 평가협의회⁵⁸⁾가 평가항목을 확정하고 평가를 수행함.

현재 평가항목은 ① 판매농협 실현, ② 경제사업 활성화 목표관리, ③ 개선권고사항 등 3개 부문 8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에 따라 2023년에 협동조합 원칙실현 항목을 통해 생산자 편익증대를, 개선권고 항목⁵⁹⁾을 통해 상생을 위한 조합과 경제지주 공동사업 발굴 추진 등을 평가하였음.

[23년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평가항목]

부 문	항 목	평가방법	비 고
① 판매농협 실현	① 사업목표 달성(42개 지표)	정량평가	농경/축경
	② 신규투자 추진실적	정량평가	농경/축경
	③ 협동조합 원칙실현	정량평가	
	③-1 고객만족도 조사	정량평가	공통
	③-2 생산자·소비자 편익	정량평가	농경/축경
	소 계	-	-
② 경제사업 활성화 목표관리	① 전략기획이행	정성평가	공통
	② 생산성향상	정량평가	농경/축경
	③ 성과관리체계	정량평가	농경/축경
	소 계	-	-
③ 개선권고 사항*	① 개선권고사항 -상생을 위한 조합과 경제지주 공동사업 발굴	정량평가	공통
	소 계	-	-
합 계		-	-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 제출자료('24.8.14)

58) 평가협의회는 15명(정부 1명, 농업인단체 대표 2, 생산·유통전문가 7, 농협 5)으로 구성된 자문기구

59) 당해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현안·핵심과제 중심의 중점관리 개선과제를 선정

개정안은 향후 평가항목 등이 변경되더라도 조합과 조합원의 편익 증대, 조합과의 상생발전 등과 관련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이 법이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⁶⁰⁾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또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농협의 경제사업에 대하여 감독, 통제 또는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60)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4. 임원의 결격사유 중 벌금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제외 (안 제49조제1항제7호)

개정안은 임원의 결격사유 중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벌금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현행과 같음)
6. (생략)	6. (현행과 같음)
7.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u>금고 이상의 형의</u> ----- -----
8. 12. (생략)	8. 12. (생략)
② 3. (생략)	② 3. (현행과 같음)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의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처벌 수준이 낮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 제49조제1항제5호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제7호는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당초 형의 집행유예는 ‘금고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2016년 1월, 「형법」 제62조의 개정⁶¹⁾으로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해졌음.

이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여전히 이 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음.

[「형법」 개정 전후 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

구분	금고형 이상	금고형 이상 집행유예	벌금형	벌금형 집행유예
개정 전 결격사유				
금고 이상 + 집행유예(금고형 이상)	○	○	×	×
개정 후 결격사유				
금고 이상 + 집행유예 (금고형 이상 + 벌금형)	○	○	×	○

61)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개정안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집행유예의 대상을 ‘금고 이상의 형’으로 변경하여 벌금형의 유예기간에 있는 자도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15. 지역농협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윤준병의원안 제49조제1항제10호)

현행법은 지역농협 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단서조항에서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위 두 가지 요건을 임원의 결격사유에 적용하지 않고 있음.

개정안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고,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조합원 신분과 일정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 -----
1.~9. (생략)	1.~9. (생략)
10.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出資座數)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역농협	10. ----- ----- <u>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u> ----- ----- -----.

의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	----- ----- -<u>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u>
11. · 12. (생략) ② · ③ (생략)	1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협중앙회

현행법상 ‘일정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분 보유’에는 조합원 자격 유지 요건이 포함(출자는 조합원만 가능)되나, 조합원 신분 보유 요건을 명시하여 수범자 입장에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나. 검토 의견

개정안은 임원의 결격사유로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 규정함.

이는 조합원의 신분을 2년 이상 유지하지 않은 자도 일정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2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임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현행법 제21조는 조합원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출자 의무를 규정⁶²⁾

62) 제21조(출자)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하고 있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업체로서 조합원에 한하여 출자가 가능함.⁶³⁾,

따라서 ‘2년 이상 일정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분 보유’에 ‘2년 이상 조합원 자격 유지’ 요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개정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음.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조합원 신분 보유 요건을 명시할 경우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편, 개정안의 단서조항에서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지역농협에 대해서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일정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분 및 조합원 자격 보유를 규정한 것은(보유기간은 미적용),

설립·합병조합에 대해 납입출자분 등 보유에 대한 예외를 과도하게 인정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제28조(가입) ③ 새로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63) 농업협동조합정관례는 준조합원은 출자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6. 중앙회 등 선거 관여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 172조제1항)

개정안은 현행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172조(벌칙) ① ----- ----- ----- ----.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조합등과 중앙회가 공직선거에 관여한 경우 조합등 및 중앙회의 대표자 등 임직원은 이미 현행 규정(제7조제2항의 ‘누구든지’에 포함)에 따라 벌칙 적용이 가능하나, ‘조합등 및 중앙회’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7조제1항의 실효성 강화 및 벌칙 규정 명확성 확보 차원에서 동의함.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7조제1항⁶⁴⁾은 조합등과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64) 「농업협동조합법」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7조제2항에는 누구든지 조합등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벌칙 조항에서 이를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공직선거 관여 금지 관련 벌칙조항]

구분	현행 벌칙조항	개정안 벌칙조항
조합등 및 중앙회의 공직선거 관여 금지(제7조제1항)	x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누구든지 조합등과 중앙회를 이용한 공직선거 관여 금지(제7조제2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행법에 따른 처벌대상인 ‘누구든지’에는 조합등과 중앙회도 해당되므로 조합등과 중앙회가 공직선거에 관여한 경우 현행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다만, 현행법에서 ‘조합등 및 중앙회’에 대하여 공직선거 관여 금지 의무를 별도 규정하고 있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조항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개정안과 같이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등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부칙

가. 조합장 선출방식에 관한 적용례(안 부칙 제2조)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1조, 제43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4조, 제107조(제44조의2 준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112조(제59조의2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제112조의11, 제123조, 제125조, 제125조의2, 제125조의4, 제125조의7, 제126조, 제130조제4항 및 제6항, 제159조의2, 제161조, 제17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2조, 제10조, 제57조의2, 제59조의2, 제107조·제112조(제59조의2 준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134조의6, 제134조의7, 제142조, 제161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조합장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항(제10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합장 직접 투표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제45조제5항 및 이를 지역축협에 준용하도록 하는 제107조제1항에 따라 경우 지역농협과 지역축협의 조합장 선출방식이 조합원의 직접 투표 방식으로 일원화됨.

위 조항이 개정된다면 현재 재임 중인 조합장에 대하여 개정안에 따라 일원화된 조합장 직접 투표방식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그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음.

또한, 선출방식 변경은 안 부칙 제2조와 같이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인 것으로 보임.

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안 부칙 제3조)

개정안 부칙
제3조(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비상임조합장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그 첫 번째 임기로 본다.

개정안 제48조는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2차례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 시행 당시 임기 중에 있는 비상임 조합장에 대하여 개정된 연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법 시행 당시의 임기도 연임 제한 횟수에 포함되는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적용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부칙 제3조에서 비상임 조합장의 이전 임기를 제한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기존에 재임 중인 조합장들의 연임에 대한 신뢰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에 따르면 2023년 3월 동시선거로 선출된 비상임조합장들은 2024년 9월 기준으로 향후 최대 14년 이상 재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과거 입법례를 살펴보면 선출직 연임 제한 시 적용례 규정은 보통 법 시행 후 선출되는 선출직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전 임기를 제한 횟수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선출직 연임 제한 시 적용례 입법 규정 사례]

□ 농업협동조합법: 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 신설

구 분	개정 내용('04.12.31개정)
내 용	■제한 없음 → 연임(2회) 가능
조 문	제4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u>조합장(상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적용례	제2조 (임원의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②제48조제1항·제2항(각각 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u>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u>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이사장의 연임 제한 신설

구 분	개정 내용('18.3.13개정)
내 용	■제한 없음 → 연임(2회) 가능
조 문	제52조(임원의 임기)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u>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적용례	제2조(이사장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u>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선출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그 첫 번째 임기로 본다.</u>

□ 수산업협동조합법 : 조합장의 연임 제한 신설

구 분	개정 내용('04.12.31개정)
내 용	■제한 없음 → 연임(1회) 가능
조 문	제50조 (임원의 임기) ①조합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u>조합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적용례	제2조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u>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이를 적용한다.</u>

□ 산림조합법 : 조합장의 연임 제한 신설

구 분	개정 내용('04.12.31개정)
내 용	■제한 없음 → 연임(1회) 가능
조 문	제38조 (임원의 임기) ①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u>상임인 조합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적용례	제2조 (조합대표권 및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②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10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u>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조합장 및 회장부터 적용한다.</u>

□ 새마을금고법 : 이사장의 연임 제한 강화

구 분	개정 내용('05.8.4개정)
내 용	■연임(2회) 가능 → 연임(1회) 가능
조 문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u>다만,</u>

	<u>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적용례	제3조(이사장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u>이 법 시행 후 선임되는</u>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문 의 처
02)6788-5415

참 고 자 료

참고 1

도시회원 현황

2023년 12월말 기준

순번	지분	사무소명	순번	지분	사무소명	순번	지분	사무소명
1	경기	수원축산농협	33	경기	북시흥농협	65	경기	수원원예농협
2	경기	안양축산농협	34	경기	군자농협	66	강원	원주축산농협
3	경기	부천축산농협	35	경기	안산농협	67	강원	원주농협
4	경기	양주축산농협	36	경기	안양원예농협	68	강원	원주원예농협
5	경기	평택축산농협	37	경기	북파주농협	69	충북	청주축산농협
6	경기	파주연천축협	38	경기	신교하농협	70	충북	청주농협
7	경기	광주지구축산농협	39	경기	부천농협	71	충남	아산축산농협
8	경기	용인축산농협	40	경기	오정농협	72	충남	천안축산농협
9	경기	고양축산농협	41	경기	부천시흥원예농협	73	충남	천안공주낙농농협
10	경기	남양주축산농협	42	경기	지도농협	74	충남	대전충남우유농협
11	경기	의정부농협	43	경기	일산농협	75	충남	대전충남양돈농협
12	경기	별내농협	44	경기	송포농협	76	충남	대전충남양계농협
13	경기	미금농협	45	경기	벽제농협	77	충남	남세종농협
14	경기	와부농협	46	경기	원당농협	78	충남	세종중앙농협
15	경기	진건농협	47	경기	신도농협	79	충남	조치원농협
16	경기	진접농협	48	경기	광주농협	80	충남	온양농협
17	경기	화도농협	49	경기	오포농협	81	충남	아산원예농협
18	경기	평택농협	50	경기	초월농협	82	충남	천안농협
19	경기	팽성농협	51	경기	곤지암농협	83	전북	전주김제완주축협
20	경기	송탄농협	52	경기	하남농협	84	전북	전주농협
21	경기	안중농협	53	경기	서부농협	85	전북	전주원예농협
22	경기	정남농협	54	경기	성남농협	86	전북	북전주농협
23	경기	발안농협	55	경기	낙생농협	87	전남	광주축산농협
24	경기	태안농협	56	경기	용인농협	88	전남	광주원예농협
25	경기	조암농협	57	경기	포곡농협	89	경북	대구축산농협
26	경기	남양농협	58	경기	기흥농협	90	경북	포항축산농협
27	경기	반월농협	59	경기	구성농협	91	경북	구미칠곡축협
28	경기	서화성농협	60	경기	수지농협	92	경북	대구경북양돈농협
29	경기	팔탄농협	61	경기	김포농협	93	경북	대구경북능금농협
30	경기	동탄농협	62	경기	신김포농협	94	경북	남포항농협
31	경기	수원농협	63	경기	금촌농협	95	경북	홍해농협
32	경기	안양농협	64	경기	고촌농협	96	경북	오천농협

순번	지본	사무소명	순번	지본	사무소명	순번	지본	사무소명
97	경북	포항농협	130	서울	남서울농협	163	인천	서인천농협
98	경북	구미농협	131	서울	강서농협	164	인천	남동농협
99	경북	고아농협	132	서울	경서농협	165	인천	인천원예농협
100	경북	인동농협	133	서울	관악농협	166	인천	인천축산농협
101	경남	진주축산농협	134	서울	서서울농협	167	인천	중구농협
102	경남	김해축산농협	135	서울	동서울농협	168	인천	계양농협
103	경남	창원시축산농협	136	서울	서울원예농협	169	인천	검단농협
104	경남	부산우유농협	137	서울	서울축산농협	170	광주	송정농협
105	경남	부경양돈농협	138	서울	서울우유농협	171	광주	서창농협
106	경남	진주남부농협	139	서울	한국양봉농협	172	광주	광주비아농협
107	경남	진주서부농협	140	서울	서울경기양돈농협	173	광주	하남농협
108	경남	진주동부농협	141	서울	한국양토양록농협	174	광주	서광주농협
109	경남	진주원예농협	142	서울	한국양계농협	175	광주	북광주농협
110	경남	양산농협	143	부산	서부산농협	176	광주	남광주농협
111	경남	웅상농협	144	부산	남부산농협	177	광주	광주농협
112	경남	물금농협	145	부산	북부산농협	178	대전	대전축산농협
113	경남	김해농협	146	부산	중부산농협	179	대전	동대전농협
114	경남	장유농협	147	부산	해운대농협	180	대전	서대전농협
115	경남	부산경남화훼농협	148	부산	금정농협	181	대전	서부농협
116	경남	남창원농협	149	부산	동래농협	182	대전	회덕농협
117	경남	동창원농협	150	부산	대저농협	183	대전	남대전농협
118	경남	내서농협	151	부산	부산축산농협	184	대전	유성농협
119	경남	진해농협	152	대구	동대구농협	185	대전	탄동농협
120	경남	마산시농협	153	대구	서대구농협	186	대전	북대전농협
121	제주	제주축산농협	154	대구	북대구농협	187	대전	대전원예농협
122	제주	제주양돈농협	155	대구	동촌농협	188	대전	신탄진농협
123	제주	제주시농협	156	대구	반야월농협	189	울산	울산축산농협
124	서울	영동농협	157	대구	성서농협	190	울산	농소농협
125	서울	송파농협	158	대구	월배농협	191	울산	중울산농협
126	서울	북서울농협	159	대구	칠곡농협	192	울산	방어진농협
127	서울	강동농협	160	대구	고산농협	193	울산	중앙농협
128	서울	중앙농협	161	인천	부평농협	194	울산	울산원예농협
129	서울	영등포농협	162	인천	남인천농협			

< 농협중앙회 정관 >

제6조의2(조합상호지원자금 등의 조성·운용) ① 본회는 회원의 균형발전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합상호지원자금을 무이자로 운용하며, 제2항 각 호의 자금에 대해서는 매년 조성·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운용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른다.

② 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자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심의회(이하 이 조에서“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조합상호지원자금

2. 이차보전자금

③ 제2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제1호의 사람을 위원장으로 한다.

1. 회원지원 담당 집행간부

2. 위원장이 지역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조합장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공무원 1인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학계전문가 2인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학계 전문가 2인

5.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이내의 관련부서장

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의결 즉시 그 결과를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안

2.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⑥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자금의 조성·운용 및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

제48조(자금의 지원) ① 중앙회는 회원의 균형발전과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조합상호지원자금(회원지원적립금 및 경제사업안정적립금을 포함한다. 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무이자로 지원한다.(2004.8.25., 2008.7.24.개정)

② 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자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심의회 (이하 본절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2012.3.2.신설)

1. 조합상호지원자금

2. 이차보전자금

③ 조합상호지원자금은 농산물 등의 판매활성화 및 유통지원 등 회원의 경제

사업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우선 지원한다.

④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하되 목적별 지원대상 범위에 대하여는 심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합병회원
2. 경영부실조합으로서 경영정상화 대상 조합으로 중앙회가 지정한 회원
3. 천재지변 등 우발적 재해로 인하여 거액의 손실이 시현된 회원
4.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회원
5. 기타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원

제48조의2(심의회 구성·운영)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회원지원담당사무
2. 위원 : 위원장이 지역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10인이내의 회원조합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공무원 1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학계전문가 1인과 위원장이 추천하는 학계전문가 1인,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이내의 관련부서장(2015.12.23.개정)
- ② 위원장이 사고, 결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원지원담당부서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회원조합장인 위원 및 외부인사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심의회 소집이 곤란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회원지원담당부서 3급이상 직원을 간사로 두며 심의회의 심의내용을 작성·비치한다.
- ⑥ 위원장이 제4항 단서에 따라 서면의결에 의하여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의결에 필요한 서면을 각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⑦ 서면의결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가부 등의 표시로 당해 위원의 의사가 명확히 표현되도록 의결의 내용을 기재하여 심의회 회의 개최전까지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서면의결을 하는 위원의 수는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의 수에 산입한다.

제48조의3(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회 의결 즉시 그 결과를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1. 지원자금의 운용계획안
2.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제49조(자금지원계획의 수립) ① 중앙회는 매회계연도 회원의 균형발전과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조합상호지원자금 지원규모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② 중앙회의 관련 부서장 및 지역본부장은 자금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 필요성, 투자규모 및 자금조달, 사업지도계획 등을 작성하여 회원지원담

당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자금지원 조건) 자금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지원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제4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지원자금과 제48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부실조합에 대한 경영정상화자금 등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지원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조합별 및 목적별 최고 지원한도는 당해년도 지원규모 및 지원목적 등을 감안하여 심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자금의 결산) 전무이사는 매회계연도 경과후 3월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자금결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지원받은 자금의 운용) 회원은 지원받은 자금을 자율적으로 운용하되, 아래 각호의 자금은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에 정기예치 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부실조합은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2004.8.25.,2010.4.1.,2012.5.1.,2016.12.28.개정)

1. 합병지원자금
2. 경영부실조합 지원자금
3. 기타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자금

제53조(자금의 회수) 회원에 지원된 자금은 지원기간 만료 즉시 회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 만료전이라도 회수할 수 있다.

1. 특별지원자금을 지원받은 회원이 중앙회가 부여한 책임경영지표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경영이 호전되어 자금의 지원없이도 자립경영이 가능한 때
2. 사업활성화 및 기타 목적자금을 지원받은 회원이 지원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농협의 공신력을 손상시키거나 중앙회의 지도방침을 위반한 때

제54조(사후관리) ① 제49조제2항에 의하여 자금을 요청한 부서장은 자금을 지원한 회원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사후관리 지도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회원지원담당부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원에 대한 사후관리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2. 자금지원 목적사업의 이행여부
3. 기타 사업활성화를 위한 조치사항 등

③ 지역본부장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 회원에 대하여 지원목적의 이행 여부를 매년 1회이상 확인하여 이행상태가 부진한 경우에는 시정 조치하거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55조(출자금의 환급) 회원이 납입하여 조성한 조합상호지원출자금의 환급은 정관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56조(준용규정) 자금의 지원 및 회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 여신관련 제규정을 준용한다.(2012.5.1.개정)

<농협중앙회 내부통제규정>

제17조(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확인방법) ①내부통제는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통제범위, 통제정도 및 통제주기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 보완, 개선하도록 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 감사규정>

제19조(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감사위원장은 연 1회 이상 본회 내 경영진이 운영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한 작동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통제환경 및 통제문화
2. 리스크평가
3. 통제활동 및 직무분리
4. 회계, 정보 및 의사소통시스템
5. 모니터링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규정>

제12조(의결사항 등)

②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농협중앙회 감사업무준칙>

제14조(감사 복명) ①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결과 보고는 수감사무소 현황 및 감사개황, 주요 지적사항 등이 포함된 감사결과보고서와 문책사항에 대한 사고조서에 의하며, 내부통제평가감사를 함께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

참고 3

농협 내부통제 제도 현황

<참고 1 : 농협중앙회 내부통제 제도 현황>

- ☐ 농협중앙회 준법감시인(준법지원부) 소관으로, 중앙회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조사·시정조치 등 처리

*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농협중앙회 내부통제규정 제1조)

<준법감시인 내부통제 업무 범위 및 내용>

구분	범위	내용
법규준수 프로그램 수립	모니터링 및 조사	· 임직원 준법 자기점검(매월) · 준법 체크리스트 점검보고(매월) · 내부통제이행사항 점검보고(매분기)
	법규준수 상담	· 법규위반을 강요받은 경우 소속 사무소의 준법감시담당자 또는 준법지원부와 상담한 후 업무 처리
	준법감시 교육	· 사무소 주관교육, 준법지원부 주관교육(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기준 위반사례 전파 등
준법감시 활동	준법감시 활동 프로그램	· 매뉴얼 등의 작성 및 배포, 내부통제 및 법규준수 체크리스트 제정 및 운영, 교육실시, 위반사례 재점검 등 (준법감시인) · 준법 체크리스트 점검보고 등(각 준법감시담당자) · 내부통제이행사항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실시

<참고 2 : 농·축협에 대한 내부통제 제도 현황>

- ☐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는 농·축협 자점(自店) 감사* 지도업무를 수행하며, 중앙회 각 사업부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농·축협 내부통제 지도업무 수행

* 조합 본점 및 지점에서 처리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제규정의 준수여부를 조합장(사무소장) 총괄 하에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업무

구분	내용
조직	조합장(사무소장) 자점감사의 총괄자(조합장은 본점, 사무소장은 지점)
	감사통할책임자 사무소장의 자점감사업무를 보좌하면서 감사자를 통할하는 자(상무급)
	자점감사자 자점감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4급 책임자)
업무	일일감사 농축협에서 발생한 거래 중 사고위험이 높은 거래를 감사항목으로 전산송출하여 실시하는 감사
	수시감사 수시점검이 필요한 항목을 주기별로 실시하는 감사
	특명감사 사무소장이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업무를 불시에 감사자를 지명하여 실시하는 감사

참고 4

인사추천위원회 관련 규정

< 농협중앙회 정관 >

제50조의2(인사추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전담대표이사등
2. 회원조합장인 이사외의 이사
3. 감사위원
4. 조합감사위원장

②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회원조합장인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2. 이사가 아닌 조합장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1명
3. 농업인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복수의 상급 농업인단체가 각각 2배수 이상으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1명
4. 복수의 학계(학회, 연구단체 등을 말한다) 등이 각각 2배수 이상으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3명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후보자 심사기준을 정하고 임원 후보자를 심사한다.

1. 임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2. 농업 및 농협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3. 조직관리 능력 및 전략적 사고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4. 윤리관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④ 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응모하거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접심사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회원조합장인 이사외의 이사 및 감사위원의 경우에는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기만료, 사임 등의 사유로 궐위되어 새로이 선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 후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⑧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의장이 소집한다.

⑨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규정 >

제3조(기능) 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후보자”라 한다)을 추천한다.

1. 전무이사
2. 삭제 <2016.12.21. 삭제>
2. 상호금융대표이사 (2012. 3. 2. 개정)
3. 회원조합장인 이사외의 이사
4. 감사위원
5. 조합감사위원장

제4조(기능) ③이사회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기만료, 사임등의 사유로 궐위되어 새로이 선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 후부터 제3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의 원인이 된 제3조 각 호의 사람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개의 및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결사항)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후보자 결정
2. 기타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의결을 함에 있어 선출할 인원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결정한다.

제9조의2(후보자 모집방법) 위원회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후보자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012. 3. 2. 신설>

제9조의3(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후보자 심사기준을 정하고 후보자를 심사한다. <2012. 3. 2. 신설>

1. 후보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2. 농업 및 농협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3. 조직관리 능력 및 전략적 사고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4. 윤리관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제9조의4(심사절차) 위원회는 응모하거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접심사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회원조합장인 이사외의 이사 및 감사위원의 경우에는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2012. 3. 2. 신설>

제11조(의사록)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